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0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김위상 · 주호영
김 건 · 김민전 · 우재준
김정재 · 이양수 · 김예지
김소희 · 이달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물운송 세부규정」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.

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설 등).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반려동물등의 운송) ①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(이하 “반려동물등”이라 한다)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항공기에 반려동물등 전용구역(이하 “전용구역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반려동물등 관리수칙(이하 “관리수칙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관리수칙의 내용에 관하여 반려동물등을 위탁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한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등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등의 위탁수화물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칙 수립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78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한 자

제8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관리수칙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용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(반려동물등의 운송) ①</u> <u>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</u> <u>따른 반려동물 등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동물(이하 “반려동</u> <u>물등”이라 한다)을 위탁수화물</u> <u>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</u> <u>는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송</u> <u>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 및 습</u> <u>도를 유지하는 등 국토교통부</u> <u>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항공</u> <u>기에 반려동물등 전용구역(이</u> <u>하 “전용구역”이라 한다)을 설</u> <u>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</u> <u>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</u> <u>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</u> <u>따라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</u> <u>송을 위한 반려동물등 관리수</u> <u>칙(이하 “관리수칙”이라 한다)</u> <u>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<u>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전용구역</u> <u>의 설치 현황 및 관리수칙의</u> <u>내용에 관하여 반려동물등을</u>

제78조(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
관한 죄) ① · 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위탁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사
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폭염·한
파 등으로 인한 「기상법」 제
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
는 경우 등 반려동물등을 위탁
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적절
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
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경우에는 반려동물등의 위탁수
화물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
제2항에 따른 관리수칙 수립
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
하여야 한다.

제78조(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
관한 죄) ① · 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
여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
하고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

